

의안 번호	152
----------	-----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09. 07.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152호

다. 제출일자 : 2023. 08. 29.

라. 회부일자 : 2023. 08. 31.

2. 제안이유

-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창의적인 교육문화여가 제공을 위한 공간인 성북 청소년 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2023.12.31.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 :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 107 (정릉동 1031-2, 3)
- 규 모 : 연면적 1,353.84㎡ (지상 3층) 대지 1,527㎡

나.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 31.(3년)

다.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위탁심사위원회 구성·심사

라. 위탁사무 :

-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청소년 문화의 집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청소년의 자치·자율활동의 지원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5. 검토의견

□ 개요

- 본 동의안은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¹⁾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 2023.12.31.자로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적격 심사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위탁현황은 다음과 같음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시설현황	소요예산	위탁기간	운영주체	운영조직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 위치 : 성북구 솔샘로 107 - 규모 : 1,353.84㎡(지상 3층)	662,564천원 (국 12,204천원) (구 650,360천원)	2021.2.1. ~ 2023.12.31. (3년)	(사)한국 스카우트연맹 (관장 : 박종국)	총 8명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 민간위탁 적정성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²⁾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 하고 있어 민간 위탁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여가 활동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 청소년 창의존 운영 등을 통해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소이므로 청소년 정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곳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제공이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 구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조례」 제7조³⁾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바, 본 사무의 재위탁 추진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31.)

<청소년 문화의 집 연도별 이용자 현황>

연도	유 아		청소년		성 인		계
	이용자수	비율	이용자수	비율	이용자수	비율	
2018년	6,603명	11%	36,861명	60%	18,102명	29%	61,566명
2019년	13,505명	14.3%	52,297명	55.4%	28,525명	30.2%	94,327명
2020년	1,374명	8%	12,720명	74%	3,168명	18%	17,262명
2021년	3,268명	9.8%	25,680명	77.1%	4,359명	13.1%	33,307명
2022년	4,938명	11.8%	30,343명	72.5%	6,588명	15.7%	41,869명
2023년 7월	2,861명	9.8%	19,719명	77.1%	4,683명	13.1%	27,263명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실적>

연도	구 분	청소년 목적사업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대관사업	기타	계
2018	프로그램	23	4	-	2	3	32
	참여인원	28,882	3,908	-	2,626	26,150	61,566
2019	프로그램	15	4	10	2	2	33
	참여인원	36,566	17,807	7,440	5,493	27,021	94,327
2020	프로그램	16	4	10	2	4	36
	참여인원	5,838	3,189	4,928	561	2,746	17,262
2021	프로그램	16	6	10	2	8	34
	참여인원	18,885	4,920	7,332	819	1,351	33,307
2022	프로그램	15	4	16	1	2	33
	참여인원	23,390	9,480	7,099	1,396	504	41,869
2023.7.	프로그램	7	120	9	2	2	140
	참여인원	12,212	5,584	8,085	1,075	307	27,263